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5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4년 10월 16일
4.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II. 제안이유

-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원 증원,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총 정원 19,167명에서 19,171명으로 4명 증원)

III. 주요내용

-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종합상황실(직속기관)에 두는 경찰공무원 증원(+4명)
 - 경감 +4명
- 나.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
 - 5급이하 △1 → 전문경력관 +1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별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4), 2013년에 폐지된 사육운영직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전문경력관으로 상계하고자 제출됨.

2.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경찰공무원 증원(+4명)

- 정부는 최근 기후 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산불, 산사태, 집중 호우, 붕괴 등과 같은 대형·복합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조직과 경찰조직 간의 정확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해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소방 및 경찰 정원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¹⁾하면서 시·도에 설치된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소방 및 경찰 정원규정은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으로 총 72명을 두도록 하고,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 8명, 그 외 16개 시·도에 각 4명씩 배치하도록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시·도 조례에 포함하고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계급과 정수를 경감²⁾ 4명으로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에 두는 경찰

1) 「소방기본법」: 2024.1.30.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2024.7.23.개정

2) 일반직 공무원 6급 및 소방공무원 소방경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공무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3명³⁾을 포함해 총 7명이고, 서울시공무원의 총 정원은 종전보다 4명 증가한 19,171명이 되었음.

- 이러한 증원은 법령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국가직인 경찰공무원의 인건비⁴⁾를 별도의 재정보전 없이 서울시 기준 인건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사육운영직 정원의 전문경력관 정원으로의 상계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대공원에 근무하는 사육운영직의 퇴직(1명)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의 정원을 상계조정 하고 있음.
-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써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채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계급구분, 직군과 직렬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⁵⁾를 말하며 서울시는 공무원 직군의 단순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2013.3.1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인 사육운영직을 전문경력관으로 대체하고 있음.
- 이러한 사육운영직 정원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49명(나군 14명, 다군 35명)이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전환을 포함하여 2027년까지 총 5명(나군 4명, 다군 1명)이 전환되면 사육운영직은 완전히 폐지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지난 제321회 정례회(2023.12.)에서는 향후 정책수요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3) 총경, 경정, 경위 각 1명

4) 2025년 367,733천원 등 향후 5년간 총 1,932,924천원 소요예상

5) 전문경력관의 직위는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숙련도에 따라 가, 나, 다 군으로 구분되며, 신분보장, 교육, 복무는 동일하나 계급구분, 임용, 보수에서 일부 특례를 인정받음.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 8·9급의 정원비율을 축소(7.0%→6.9%)하고 전문경력관의 정원 비율을 상향(1.5%→1.6%)하도록 동 조례가 개정된 바 있음.

- 이와 같이 동물의 사육과 관리, 동물원 운영 등의 업무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장기간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경력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수분야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